

구립동안명성데이케어센터 이용안내 (2025년)

1.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어르신
노인성질환어르신 ※ 단, 차량탑승 가능한 어르신
2. 이용시간 : 월~금요일 (주·야간보호 : 8시 ~ 22시)
토요일 (주간보호 : 8시 30분 ~ 17시 30분)
※이용시간은 송영시간 포함된 시간입니다. 공휴일·일요일은 휴관입니다.
3. 이용정원 : 20명
4.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
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이용자와 보호자가 필히 함께 내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이용료

(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등급	일반(1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3~6시간	40,650	37,630	34,740	33,160	31,580	31,580	6,098	5,645	5,211	4,974	4,737	4,737
6~8시간	54,490	50,470	46,590	45,000	43,400	43,400	8,174	7,571	6,989	6,750	6,510	6,510
8~10시간	67,770	62,780	57,960	56,380	54,780	54,780	10,166	9,417	8,694	8,457	8,217	8,217
10~13시간	74,660	69,160	63,900	62,290	60,710	54,780	11,199	10,374	9,585	9,344	9,107	8,217
13시간초과	80,060	74,170	68,520	66,930	65,350	54,780	12,009	11,126	10,278	10,040	9,803	8,217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일 반 - 건강보험공단 85% 지원, 본인부담금 15%

※경 감 - 건강보험공단 94% 지원, 본인부담금 6%, 건강보험공단 91% 지원, 본인부담금 9%

※수급자 - 건강보험공단 100%

[등급외자 1일 이용료 27,390원 : 주간 중식비 포함, 석식비 별도]

예) 4등급 8시간 이용시 (일 8,450원/중·간식 5,000원)
20일 이용 13,450원×20일=269,000원

※ 이용료는 후불로 계산되며 매월 15일까지 전월분을 아래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10901-04-276399 (예금주: 구립동안명성데이케어센터)

6. 본 센터는 이용시설로서 연중 지속 이용하실 수 있는 센터이나, 타 이용자의 이용을 위해서 장기간 미이용시(3주이상) 차순위 대기자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질환 및 기타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미이용시에는 필히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총영차량 이용자는 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거나 시간의 변동을 요할 경우 필히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호차(스타리아)	010-6700-2032	2호차(스파크)	010-6701-2032
-----------	---------------	----------	---------------

8. 이용자가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욕설, 폭언, 폭행 및 유사행위를 할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드리며, 보호자는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처방 등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며, 이용자의 상태가 심해질 경우 계약해지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타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를 이용할 경우 필히 사전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재가요양급여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호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0. 데이케어센터 이용에 대한 문의 혹은 건의 사항이 있으신 보호자께서는 전화, 의견함, 인터넷카페 (<http://cafe.daum.net/hpsenior>)등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간의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하되 본 센터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갱신 후의 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작성한다.
3. **급여의 범위**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급여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비용의 부담
 - ① 재가급여대상자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정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한다.
 - ② 감경 대상자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개인이 부담한다.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구청의 입소이용의뢰 신청에 의한 승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지자체와 공단에서 전액지원한다.
 - ④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 작성시 확인)한다.
 - ⑤ 등급외자 이용비용은 매년 서울시의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에 의한 금액을 부담한다.

- 비급여 항목

- ①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 ② 이·미용비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하며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하다.
 - ③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기본원칙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 ④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은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한다.
- 월 이용료는 매월 1일부터 그 말일을 기준으로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이용자의 상태 및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② 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가족행사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
- ③ 계약 내용 위반 또는 급여제공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시정요구를 할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
- ② '이용자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 ④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6. 계약해제 요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와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 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8. 배상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가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 ① 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④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 ② 센터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④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⑤ 센터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 ⑥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때

○ 문 의 : 02) 926-2030

○ 담당자 : 나윤희 사회복지사



구립동안명성데이케어센터